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,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원본(직인날인)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*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"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"으로 발급)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*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*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(확인서)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(또는 홈택스), 해당직장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(이직)자	① 재직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*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*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	①, ②, ③ 해당직장
	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(이직)자	① 재직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* 「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직장
	직장가입자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재직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 필수)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
자영업자	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	①, ② 세무서
	법인대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배당소득 있을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제출) ③ 재직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①, ②,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
	신규사업자 (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)	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공고일 이전 가입) ④ 국민연금 미가입시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(부분)	① 세무서 ②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④ 세무서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	①, ② 해당직장/세무서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근로자/일용직근로자	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* 프리랜서의 경우,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과 위촉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해촉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해당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	
자산입증서류목록	*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09조의2 및 「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"부동산 소유현황"(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),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 발급)	* 등기소/세무서(대법원 인터넷 등기소포함)	
기타 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한함)	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(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)	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	

*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08.30.)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번호(뒷자리 포함) 등을 공개로 "상세"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며,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(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) 제출해야 하며,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.

* 상기 서류 및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